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5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4.

발 의 자 : 문진석 · 박정현 · 손명수
이정문 · 강준현 · 최혁진
홍기원 · 맹성규 · 이재관
김교홍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이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는 사장을 해임할 수 있음.

그런데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지배·관리·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 63조의9 신설 등).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1항제4호 중 “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”을 “제58조제4항·제5항 또는 제63조의9제2항”으로 한다.

제3장제2절에 제6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3조의9(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감사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지배·관리·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.

제76조제2항 전단 중 “제63조의8까지”를 “제63조의9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감사 등에 대한 적용례) 제63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(임직원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,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. 1. ~ 3. (생략) 4. <u>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u> 5. (생략) ②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0조(임직원의 결격사유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제58조제4항 · 제5항 또는 제63조의9제2항에</u> ----- -----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<u>제63조의9(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감사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지배 · 관리 ·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u> <u>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사장을</u>

